##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현행민법실천에서 제기되는 민사관련문제들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민사법률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는 민사법률행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민사법률행위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에서 중요하게 론의되여야 할 문제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의 법적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민사법률관계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적효과를 목적한 행위자의 주관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과정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주객관적기준에 따라 의 사표시의 구성요소는 크게 목적의사와 표시의사로 구분할수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서 목적의사란 법률행위를 하려는 행위자의 내심적의사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목적의사란 일정한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관적의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의 목적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결과 실제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의사표시행위를 표시의사라고 말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일치하게 이루어질것을 요구한다. 그 것은 민사법률행위가 당사자들의 리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리 해관계의 실제적인 실현은 당사자들의 목적의사가 정확히 외부에 전달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하여 당사자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불일치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민사행위에 관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를 크게 당사자의 주관 적의사에 따르는 불일치와 외부적작용에 기초한 불일치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리고 당사 자의 주관적의사에 따르는 불일치를 행위자자신의 의도적인 불일치(실례로 허위적인 민 사행위)와 무의식적인 불일치(실례로 본질적착오를 범한 민사행위)로 더 구체화할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민사행위들에 대한 법적효력을 당사자들의 목적의사를 기준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표시의사를 기준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실천에서 민사법률관계의 정상성과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민사관계 당사자들의 리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해명하여야 할 중요한 법률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시기 국제적으로 주장되는 리론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사행위의 효력을 행위당사자의 목적의사에 기초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목 적의사주의리론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당사자의 목적의사보다도 표시의사를 더 중시하여 부 여하여야 한다는 표시의사주의리론이다.

목적의사주의리론에 의하면 민사법률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사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의사는 다만 행위자의 목적의사의 표현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 표시의사와 목적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의미는 행위자의 목적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에 맞게 효력을 부여하려는 측면에서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사주의리론은 행위당사자의 목적의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합리성이 인정될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거래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민사관계 당사자들은 상대방당사자의 목적의사보다도 객관적으로 표현된 표시의사를 더 신뢰하고 중요시하여 그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민사법률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의 목적의사와 어긋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법적효력을 거부한다면 공고한 민사거래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심히 파괴하는 결과를 산생시킬수 있다.

목적의사주의리론과는 달리 표시의사주의리론에서는 민사법률행위가 행위자의 속생각이 아니라 그가 외부에 표시한 의사이며 따라서 행위자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불일치할때에는 그의 법적효력을 철저히 객관적립장에서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래야만 표시된 의사를 신뢰하여 행위를 진행한 상대방당사자들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으며 경제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표시의사주의리론도 역시 제한성이 있다.

만일 민사관계의 안정성에만 치중하면서 표시된 의사에 절대적효력을 부여한다면 행위당사자의 리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제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공화국민법은 행위당사자의 목적의사나 표시의사의 어느 일면만을 절대시하는 다른 나라들의 민법과는 달리 목적의사와 표시의사와의 련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객관적인 표시의사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들에 한해서는 표시의사보다도 당사자의 목적의사를 더 중시하여 해당 행위의 법적효력과 효과문제를 확정하고있다. 즉 행위당사자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불일치한 결과로 이루어진 민사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목적의사와 표시의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량자의 련관관계를 각각 확증한데 기초하며 이와 함께 해당 불일치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효력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목적의사와 표시의사의 불일치는 무엇보다먼저 행위당 사자의 주관적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수 있다.

이것은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행위당사자의 허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러한 허물을 행위를 수행할 당시 당사자들이 해당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있었는가 모르고있었는가에 따라 고의와 과실로 더 세분화할수 있다.

우선 행위당사자의 허물에 기초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고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수 있다. 여기에서 고의란 해당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고있을뿐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희망한 당사자의 주관적심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심리(고의)밑에 이루어진 행위를 허위적인 민사행위라고 말한다. 다시말하여 허위적인 민사행위란 행위자가 의식적으

로 자기의 진정한 의사(목적의사)와 전혀 다르게 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실례로 목적한 행위는 위법적인 외화밀매(은폐된 민사행위)인데 이것을 꾸어주기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은폐시키는 행위(허위적인 행위)를 들수 있다. 이밖에도 위법적인 국가주택매매를 교환의 방법으로 하는 행위라든가 재산몰수를 기피할 목적밑에 해당 재산을 눅은 가격으로 파는 행위 등도 있다.

우의 실례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허위적인 민사행위는 보통 그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허위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효력과 효과인정에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목적의사에 기초한 행위(은페된 민사행위)와 그 위법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수행된 허위적인 민사행위의 적법성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여야 한다. 즉 허위적인 민사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데 대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근거로하여 무효로 인정하며 동시에 은페된 민사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부합될것을 요구하는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어긋나는것을 근거로 하여 해당 행위의 무효인정과 함께 몰수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또한 행위당사자의 허물에 기초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과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과실이란 해당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견하지 못한 행위자의 주관적심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심리(과실)밑에 이루어진 행위 를 착오에 의한 민사행위라고 말한다.

민사행위에서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목적의사와 표시의사가 다르게 진행되고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목적의사가 없었다는것을 주장하게 되 며 이러한 주장사실여부가 해당 행위의 법적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행위자가 착오 를 범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게 된다.

여기에서 류의할 문제는 착오에 의한 민사행위는 그것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착오(본 질적착오)인 경우에만 그에 대한 취소권이 인정된다는것이다.

이것은 공화국민법이 착오일반에 대하여 다 취소권을 주지 않고 본질적착오에 한해서 만 당사자들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질적착오에는 일반거래의 관념에서 보아도 보통사람(정상적인 사유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정도의 착오만이 해당된다.

공화국민법에서 착오일반에 대하여 다 취소권을 주지 않고 본질적착오만을 취소할수 있게 하는것은 이미 이루어진 민사거래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위당사자들의 재산적리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은 상대방당사자의 목적의사보다도 그것이 객관화된 표시의사를 더 신뢰하여 민사적인 거래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인정에서 당사자들의 표시의사보다도 그의 목적의사를 더 중요시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설정된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뿐아니라 상대방당사자나 제3자의 리익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반면에 민사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행위자로서는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결과를 산생시키는 착오행위에 대하여서도 취소권을 주지 않는다면 공정성보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사관계의 기본원칙을 관철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공화국민법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의사와 어긋나게 착오에 빠져 행위를 한경우 착오일반에 대하여서는 취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본질적인 착오사항에 대해서만 취소권을 인정한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목적의사와 표시의사의 불일치는 다음으로 외부적요인 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질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그 원인으로 되는 외부적요인이 당사자의 심리에 주는 구체적내용에 따라 사기당한 민사행위와 강요당한 민사행위로 나누어볼수 있다.

사기당한 민사행위는 행위자가 상대방당사자의 기만행위에 유인되여 자신의 목적의사 와 어긋나게 수행한 민사행위를 말한다.

사기당한 민사행위에서 행위자의 심리에 작용하는 기본요인은 현실상황에 대한 그릇된 인식(착오)을 조성하려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만행위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행위를 수행할 당시까지도 상대방의 기만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사기는 원래 개인주의를 생활방식으로 하는 낡은 사회의 산물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민사관계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행위이다.

이로부터 공화국민법은 상대방당사자의 기만행위로 수행된 사기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취소권행사여부에 따라 해당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며 원상회복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기당한자의것은 되돌려주지만 사기한자의것은 국고에 몰수한다.

강요당한 민사행위란 행위자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한 정신육체적고통과 심리적압 박감으로부터 자기의 목적의사와 어긋나게 수행한 본의 아닌 행위를 말한다.

사기당한 민사행위와는 달리 강요당한 민사행위에서 행위자(강요당한자)의 심리에 작용하는 외부적요인은 강한 정신육체적고통이나 심리적압박감을 내용으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다.

강요당한 민사행위에서는 상대방당사자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정신육체적고통 및 심리적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자의 심리가 먼저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행위자는 자신의 표시의사가 목적의사와는 어긋난다는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요당한 민사행위는 사기당한 민사행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원래 강요당한 민사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해로운 방법으로 공포를 조성하여 공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위법적인 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공갈죄에 해당된다.

공화국민법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서도 행위자의 재산적리익을 보호 하려는 취지로부터 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부여하고있다. 즉 강요당한자가 취소 권을 행사하면 해당 행위를 무효로 인정하는것과 함께 일방적원상회복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그의 법적효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리익과 경제거래의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우리 공화국법률제도의 우 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